

전시기 일본 여성의 광산노동과 보육

아키타현(秋田県) 하나오카(花岡)광산을 중심으로 *

김경옥

1. 들어가기

일본의 여성이 노동자로서 광산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 후반부터의 일로, 1924년에는 이미 약 7만 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들이 각지의 광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9월 1일 광부노역부조규칙 제7조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갱내노동과 심야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시행되면서 광산의 여성노동자는 현저히 감소된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1939년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금지를 완화하는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특례를 발령하고, 이로써 광산

김경옥(金慶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를 졸업한 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일본학 석사,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전시기 일본여성의 노무동원정책과 인구정책을 비롯한 일본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여성사와 노동과 보육 및 젠더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戰時期における女性の工場労働と保育」(『年報地域文化研究』), 「総力戦体制期における「戦時保育」と保育施設の変容」(『アジア地域文化研究』),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전시노무관리에 관한 연구」(『日本歴史研究』) 등이 있다.

<https://doi.org/10.29154/ILBI.2019.20.308>

의 여성노동자는 다시 늘어나게 된다.

광산과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로는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¹와 이와오 사오리(岩屋さおり),² 노요리 도모코(野依智子)³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니시나리타는 후쿠오카현(福岡県)에 있는 지쿠호(筑豊)탄광 여성노동자의 형성과 발전 및 쇠퇴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인원수에서 남성노동자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했던 여성노동자가 쇠퇴하는 과정에는 기계혁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장려된 내직(부업)과 복리시설에 의해 광산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되어, 그때까지 여성노동자가 조달한 생활비 문제도 노동쟁의와 같은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반면 이와오는 니시나리타와 같은 지쿠호탄광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금지를 둘러싼 1910년대부터 1930년대의 언설을 중심으로 ‘보호’라는 개념에 착목하여 ‘보호’가 언제, 어떻게 정당화되어 여성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오는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이 금지된 것은 여성을 갱내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그에 수반된 생산체계의 재편, 경영합리화에 의해서 노동자를 이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결과,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서 여성을 불필요한 노동자로 간주하는 작업이 행해졌다고 지적하였다.⁴ 노요리의 경우에는 1904년부터 1939년의 후생성령에 따라 여성의 갱내노동금지가 해제될 때까지를 배경으로 지쿠호탄광의 갱내보육소를 살핌으로써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의 교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지쿠호탄광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의 쇠퇴과

1 西成田豊, 『近代日本労働史-労働力編成の論理と実証』, 有斐閣, 2007.

2 岩屋さおり, 「炭鉱労働における女性労働者の排除の正当性: 女性労働者の坑内労働廃止をめぐる」, 『待兼山論叢』 第31号,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1997.

3 野依智子, 「近代筑豊炭鉱における坑内保育所の展開過程」,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20』, 九州大学, 2005.

4 岩屋さおり, 「炭鉱労働における女性労働者の排除の正当性: 女性労働者の坑内労働廃止をめぐる」, 11쪽.

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으로, 전시기 다수의 광산에서 노동자로서 다시 주목을 받은 여성노동자와 전신탁아소로서 기능한 보육소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지쿠호탄광과 탄광이 위치한 지역과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키타현의 하나오카광산을 대상으로 하여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1937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45년까지를 배경으로, 여성의 갱내노동으로의 재투입과 이에 따른 광산 보육시설의 역할,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생활환경을 통한 건강과 생활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광산의 여성노동자가 담당한 역할 및 지역과 광신탁아소와의 관계도 명확히 할 것이다.

국책산업이었던 전시기의 광산은 증산의 요구와 함께, 군수산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1937년부터 1945년에 걸친 총력전시기에 동(銅)의 증산이 요구되었을 때 하나오카광산은 금속광산으로서 1944년 1월 국책회사 제국광업개발회사(이하, 제국광발)⁵에 병합된 후 1944년 4월 군수회사로 지정되었고 광산의 노동자는 징용광원이 되었다. 하나오카광산은 1935년에는 유치원을, 1937년에는 탁아소를 설치하였다.⁶ 하나오카탁아소는 1948년 5월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오다테(大館)시립하나오카보육소로 개칭된 이래 현재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시설이다.⁷

5 일본 정부는 1939년 8월 중소광업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국광업개발회사를 설립하였다. 제국광발은 금 이외의 비철금속광업에 대한 자금융통과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채산(採算)이 불리한 광산이나 휴면광구를 정부의 보증하에 개발하고 중앙선풍장(選鉱場)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6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1943, 566쪽. 중앙사회사업협회의 전신은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가 자선구제사업을 목표로 자선단체를 지도·장려하기 위해 1908년에 설립한 중앙자선협회이다. 1921년 사회사업협회로, 1924년에는 중앙사회사업협회로 개칭하고 방면위원(현 민생위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사회사업관계자를 조직화하여 구호법실시촉진운동과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는 중앙사회사업협회사회사사업연구소가 1940년부터 1942년에 걸쳐 일본 내지에 있는 보육시설을 조사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7 『大館市史』에는 1934년 11월 하나오카광산의 서무계장인 시라이시(白石貞太郎)의 계획으로 주식회사 후지타구미 하나오카광산 탁아소로서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탁아소의 모습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에 의하면 나가야(長屋) 한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든 것이라 한다.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第3巻下, 大館市, 1986, 246쪽.

하나오카광산에서는 전쟁 말기 중국인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학대가 있었고, 이로 인해 1945년 6월 30일 중국인이 봉기를 일으킨 ‘하나오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오카광산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나오카 사건’만이 주목되는 경향이 강하며 하나오카광산의 여성노동자와 보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노동자와 탁아소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전쟁 말기의 ‘하나오카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시기 일본 여성의 역할을 미혼여성은 노동력으로, 기혼여성은 국방부인회와 같은 부인단체에서의 위문과 환송이라는 전쟁협력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⁸ 그러나 본고에서는 광산의 노동력으로 재투입된 여성노동자와 보육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을 고찰하되, 전시기 일본이 여성노동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역할 인식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⁹ 또한, 현대 일본의 복지정책에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전시기 일본의 보육정책을 통하여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에 앞서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8 전시기 여성근로동원관련직령은 미혼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38년 4월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근로보국협력령(14세~25세의 미혼여성), 여자근로정신대, 여자정신근로령(12세~40세의 미혼여성) 등이 대표적이다. 기혼여성은 국방부인회, 애국부인회, 연합부인회, 그리고 1942년부터는 이들 단체를 통합한 대일본부인회라는 부인단체에 소속되어 전쟁협력에 임하였다. 기혼여성은 공식적 법령하의 노동동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9 전시기 여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한 산업으로는 국책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광업과 생산력확충을 위한 군수산업, 그리고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혼여성을 적극 동원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탁아소를 증설하였다. 아래의 표는 1940년과 1944년의 여성 종업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 종류	1940년 10월 1일 국세조사	1944년 2월 22일 인구조사
광업	69,229명	122,471명(약 53,000명 증가)
금속·기계기구·화학	1,900,396명	2,164,897명(약 264,500명 증가)
농업	7,183,931명	7,714,261명(약 60만 명 증가)

2. 중일전쟁 이전의 하나오카광산과 광부노역부조규칙

본 장에서는 먼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하나오카광산의 역사적 경위를 확인하고, 1926년과 1928년의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을 중심으로 중일전쟁 이전의 여성노동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하나오카광산의 역사적 경위

하나오카광산은 아키타현 북부 해발 100미터 내외의 평평한 분지에 있는 광산이자 광산촌이다. 1886년 처음으로 광상(鉱床)이 발견되고 1915년 5월 합명회사 후지타구미(藤田組, 현 도와(同和)광업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어, 같은 해 6월 고사카(小坂)광산사무소의 하나오카 지산(支山)이 되었다. 새로운 광상은 1917년, 1919년, 1924년에 각각 발견되고, 1930년에 들어서도 연이어 발견되어,¹⁰ 그 번영을 나타내듯이 1932년에 하나오카초(花岡町)가 되고, 1936년 10월 23일에는 지치부노미야(秩父宮)의 광산시찰이 있었다.¹¹ 1937년 12월 말 시점으로 하나오카광산 사무소직원은 43명, 노동자는 1,757명으로 그 중 여성노동자는 갱외부(坑外婦) 79명이었다.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여성의 갱내노동금지 해제 이전이었으므로 여성노동자 중에 갱내부(坑内婦)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해외에서 광석의 수입이 곤란하게 되자 하나오카광산을 포함한 국내 광산에 증산을 요구하였다. 하나오카광산은 계속된 광상의 발견과 함께 동광(銅鉱)으로서 기대되어,¹² 1943년에

10 同和鉱業株式会社, 『七十年の回顧』, 1955, 149쪽.

11 同和鉱業株式会社, 『七十年の回顧』, 150쪽.

12 이 시기 하나오카광산 표창에 관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増産に誉のご鑑山 - 來月六日・強調週間に表彰式 - 全国金属増産強調期間」, 『朝日新聞』, 1941. 10. 24; 「“汗の額”に榮冠 - 鶴嘴の誉一大臣賞授與」, 『朝日新聞』, 1941. 11. 7; 「勤續の鶴嘴戰士 - 晴れの表彰 - 鑑山記念日の行事」, 『朝日新聞』, 1942. 9. 22; 「輝く職場の金鷄 八十名に誉の榮冠: あす初の勤勞顯功章を授與」, 『朝日新聞』, 1943. 2. 10.

는 정부의 지령으로 제국광발¹³에 위탁경영되고 1944년 1월에는 고사카광산의 지산에서 독립하여 하나오카광업소가 된다. 1944년의 하나오카광산 채굴동량이 7,028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국광발에 의한 증산정책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해 하나오카광산의 노동자 수는 “직할부 4,500명, 청부업자구미(組)부 1,500명, 조선인 4,500명, 징용공 900명(정신대 300명, 근로봉사대 300명, 학도대 300명), 중국인징용공 300명, 그 외에 미국인과 중국인포로 100명”으로, 합계 1만 명 이상이 된다. 1937년의 1,757명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

하나오카광산의 증산 배경에는 지역민의 노무 참가도 무시할 수 없다. 1941년 하나오카초의 인구는 8,324명(남성 4,104명, 여성 4,230명¹⁵)에 하나오카광산은 남쪽으로 5개의 갱이 있고, 그 외는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였다. 이 겸업농가는 감차카, 가라후토, 홋카이도, 만주 방면으로 어부나 잡부와 같은 계절노동자가 되거나 부근에서 나무를 베며 토목건축부가 되기도 하고, 통근광산노동자가 되어서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광부노역부조규칙과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는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광산에 등장하여 1932년까지는 남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심야업과 갱내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933년부터 여성 및 16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심야업금지와 갱내노동금지규정이 시행된 후,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광산 여성노동자의 감소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광부노역부조규칙에서 명시한 여성노동자 관련 규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광업법의 광부노역부조규칙은 공장법과 함께 ‘노동자보호법규’로 일컬어진다. 내무성 사회국은 1923년 공장법을 개정하여 여성 및 16세 미만 연소자의 심야업을 금지하였다. 또한 공장법이 개정된 것과 균형을 맞추기

13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411쪽.

14 秋田県産業労働部鉱務課, 『秋田県鉱山誌』, 1968, 24쪽.

15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421쪽.

〈표 1〉 광부노역부조규칙의 개정 전과 후

내용	개정 전	1926년 6월 개정 후	1928년 9월 개정 후
보호광부의 범위	만 15세 미만, 여자	만 16세 미만, 여자	만 16세 미만, 여자
갱내일반광부의 취업시간	12시간	11시간	10시간
보호광부의 심야업금지	오후 10시~오전 4시	오후 10시~오전 5시	오후 10시~오전 5시
보호광부의 갱내노동	허가	금지 (3년간 유예)	금지[박층(薄層)채굴탄 갱은 광산 감독국장의 허 가를 조건으로 예외 인 정. ¹⁶ 5년간 유예]
임산부의 휴양신청	산후 4주간	산전 4주간, 산후 6주 간 (4주간 경과 후, 의사 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 을 경우에만 취업 가능)	좌동
수유시간	—	1일 2회 각 30분 이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수유 중인 여성노동자의 희망에 따름)	좌동

출처: 勞働省, 『勞働行政史』, 勞務法令協會, 281~287쪽.

위해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에 착수, 1926년 6월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표 1〉은 광부노역부조규칙의 개정 전과 후를 나타낸 것이다.¹⁶

1926년의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은 보호광부의 범위확장부터 취업시간 제한, 심야업금지, 산전산후의 휴양과 수유시간 규정까지 다기에 걸친 개정이었지만, 16세 미만과 여성의 갱내노동금지조문을 3년간 유보¹⁷한다는 내용은 갱내노동금지에 반대하는 광업자의 의향에 따른 것¹⁸이었다. 그럼에

16 勞働省, 『勞働行政史』, 勞働法令協會, 1961, 286쪽.

17 사회국 노동부장관은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에 즈음하여 설명서에서 “여자의 심야업금지나 갱내노동 금지는 인도상·위생상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석탄광업에는 4만 7,000명의 여자가 갱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갱외에서도 수천 명의 여자가 심야업에 종사하며, 그 다수는 광부의 가족으로 그들의 취업금지는 광부의 가계와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하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유보한다”고 말하고 있다. 勞働省, 『勞働行政史』, 279~280쪽.

18 광업자 측에서는 보호광부의 심야업 금지에 관해 “공장의 심야업 금지와는 사정을 달리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제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勞働省, 『勞働行政史』, 284쪽.

도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수유시간 규정(제16조)에 수유시간 확보가 명기되어 있는 점이다.

1928년 9월 1일 사회국이 내무성령 제30호에 의한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을 공포하여, 보호광부의 갱내노동은 박충채굴탄갱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된다.¹⁹ 1933년 9월 1일 시점에서 박충 및 잔탄(殘炭)을 이유로 여성 및 16세 미만 연소자의 갱내노동이 허가된 탄갱은 121개소이고 갱내에서 일하는 보호광부는 5,551명으로, 그 후부터 이러한 특례는 허가하지 않는 방침이 취해졌다.²⁰ 그러나 전국의 광산에서 보호광부는 “6천명 중 5천여 명이 예외규정으로 인해 일하고 있고 이 중에는 박충이라 할 수 없는 곳도 박충이라고 신고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²¹ 1936년 10월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수는 2만 5,512명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박충채굴탄갱으로 예외가 인정된 갱내부 4,651명을 포함한 석탄광업이었다.²² 그 후 여성노동자는 갱내노동과 심야업에 대한 금지로 대량 해고되었는데, 이는 후생성령(厚生省令)에 의해 여성의 갱내노동금지가 해제되는 1939년까지 계속된다.

3. 전시기의 여성 광산노동자

이 장에서는 1939년 9월 이후 여성의 갱내노동금지해제특례 기준과 조건을 통해 여성의 갱내노동에 대한 후생성의 입장을 검토하고, 하나오카광산 여성노동자의 생활과 위생을 분석함으로써 여성노동자가 처한 상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하나오카광산의 노무관리를 통해 여성노동자에게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는지 젠더적 관점에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9 勞働省, 『勞働行政史』, 287쪽.

20 勞働省, 『勞働行政史』, 287쪽.

21 「脱法の諸鉱山に取締りの眼光を：活況で婦女子を酷使」, 『朝日新聞』, 1933. 9. 28.

22 市川房江編纂, 「第3節鉱山に於ける生産活動」, 『婦人会の動向』, 文松堂出版株式会社, 1944, 57쪽.

1)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금지해제특례

1939년 8월, 후생성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광부의 아내나 가족인 25세 이상의 여성을 광산감독국장이 허가한 후에 사용(使用)²³할 수 있는 ‘여자갱내취업특례’를 결정하고 여성에게 갱내노동을 허가한다. 25세 이상 광부의 아내나 가족으로 여성을 한정된 것은, 부부나 가족이 주로 함께 일하는 광산노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98%가 이미 기혼자로서 평균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인구문제의 입장에서 비교적 영향이 적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²⁴ 그 외에도 ①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②임산부 사용금지 ③영유아를 위한 보육소와 그 외의 시설 설치 ④휴양과 위생 등의 복리시설 확충 등을 조건으로 후생성은 여성에게 갱내노동을 허가하였다.²⁵

또한 후생성은 보육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여성의 갱내노동을 인정한다는 통첩을 각 광산에 발하고²⁶ 1940년 3월에는 노동성에 설치된 노무관리 위원회의 노동력유지책에 관한 답신에서 “각 사업장의 여자 교육은 한 사람의 노무자로서의 교양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교양에 무게를 두어 한층 더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게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⁷

1939년 11월 증산 요구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던 하나오카광산에서도 갱내노동금지해제특례로 “여갱부 50명을 채용해서 26일부터 갱내에 투입”하고 있다. 당시 여성노동자에 대한 후생성의 사용허가령에 따른 하나오카광산 여성노동자의 모집은 “전국 광산계의 톱”이었다.²⁸ 여성의 갱내노동금지해제특례 이전인 1936년 10월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2

23 고용(雇用)은 고용주나 사용자가 노동자와의 계약에 의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지불을 하는 관계를 뜻하고, 사용(使用)은 고용주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지불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뜻한다. 여기서는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사용을 쓰기로 한다.

24 「女子の入坑に特例 - 労働力不足を補足」, 『朝日新聞』, 1939. 8. 10.

25 「女子の入坑に特例 - 労働力不足を補足」, 『朝日新聞』, 1939. 8. 10.

26 「保育施設に万全」, 『朝日新聞』, 1939. 10. 1.

27 市川房枝編纂, 「第1節労働員と婦人」, 『婦人会の動向』, 文松堂出版株式会社, 1944, 44쪽.

28 「おはこがトップ(秋田)」, 『朝日新聞』, 1939. 11. 26.

〈표 2〉 석탄광산노동자 1시간 평균임금(1942년 후생성조사)

연령	여성노동자(전)	남성노동자(전)
20세 미만	12.7	25.8
30세 미만	16.1	35.6
30세 이상	18.4	38.0

출처: 市川房江編纂, 『第3節鉱山に於ける生産活動』, 58쪽.

만 5,512명이었다.²⁹ 그러나 여성이 갱내노동에 재투입된 1939년 이후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1940년에는 5만 6,378명, 1941년은 6만 3,291명, 1942년 6월 말에는 7만 7,961명, 그리고 1944년에는 12만 2,471명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³⁰

1933년 이전의 광산노동은 부부가 함께 일한다는 특성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도 기혼자나 연장자가 많았지만, 전시기에는 20세 미만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30년의 국세조사에서는 25세 미만의 여성이 천 명 중 342명이었지만 전시기에는 오히려 20세 미만이 증가하여, 193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42년에 20세 이상이 132로 증가하는 반면 20세 미만은 165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에 의해 광산에서 20세 미만까지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¹ 그렇다면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어느 정도였을까? 다음은 석탄노동자의 1시간당 평균임금이다. 동광인 하나오카광산과는 다르지만, 참고로 확인해 보자.

육체적으로 격한 중노동이 요구되는 광산노동이었지만,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저임금노동자였던 광산의 여성노동자는 전시기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증산 요구 사이에서 갱내노동에 재투입된 것이다. 갱내노동금지해제특례는 여성노동정책만이 아닌 출산과 보육이라는 인구정책에도 주안점을 두어, 여성 본래

29 1936년 10월 10일 시점으로 금속광업 6,141명, 석탄광업 18,694명(갱내 4,651, 갱외 14,043), 석유광업 147명, 그 외 광업 530명으로 총계 25,512명의 여성이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市川房枝編纂, 『第3節鉱山に於ける生産活動』, 57쪽.

30 市川房枝編纂, 『第3節鉱山に於ける生産活動』, 58쪽.

31 市川房枝編纂, 『第3節鉱山に於ける生産活動』, 58쪽.

의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오카광산 여성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위생

광산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생활환경을 둘러싼 건강과 위생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이에 관해서는 당시 노동과학연구소³² 연구원이었던 이노우에 후사에(井上房江)가 하나오카광산의 갱내노동자 중 남성 487명, 여성 55명, 계 542명을 대상으로 한 폐결핵질환 이환자³³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후생성이 1939년 8월 9일 ‘여자갱내취업특례’에서 조건으로 내건 ①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②임산부 사용금지 ③영유아를 위한 보육소와 그 외의 시설 설치 ④휴양과 위생 등의 복리시설 확충 등의 조건이 광산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여성노동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1941년 11월, 하나오카광산의 노동자는 광산사택에 거주하는 광부가 1,123명, 광산사택이 아닌 외부에서의 통근광원이 956명(주로 겸업농가)으로, 합계 2,079명이었다.³⁴ <표 3>은 조사대상인 피검자를 직종과 연령별로 구분한 것이다.

25세 이상부터 갱내노동이 가능하였으므로 총전부 여성노동자 중에는 19세 이하는 보이지 않고 합계 55명 중 29세 미만이 7명(13%), 30세 이상이 48명(87%)을 점하고 있어, 연장자가 많은 광산노동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피검자 542명 중 “엑스레이 직접 촬영에 의한 결과를 본바 결핵은 남자 7명, 여자 3명, 합계 10명, 규폐(진폐의 일종)결핵 9명으로 결핵이환자는 합계 19명,

32 노동과학연구소(勞働科學研究所)는 과학적 분석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937년 1월 소장 테루오카 기토(暉峻義等), 이사장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서는 기리하라 시게미(桐原稔見), 이시카와 도모요시(石川知福) 등이 있으며, 연구부문은 8개(노동생리학, 산업심리학, 산업위생학, 직업성질환, 생체측정, 집단영양, 사회과학, 농업노동)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33 이환자(罹患者)는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뜻하고, 환자(患者)는 질병만이 아니라 다쳐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포함하는 광의적인 표현이다. 여기서는 폐결핵질환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이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34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労働科学』第20巻第10号, 労働科学研究所, 1943. 10, 71쪽.

〈표 3〉 피검자의 직종별, 연령별 인원수

성별	직종	19세 이하	29세 이하	39세 이하	40세 이상	계	피검자에 대한 직종 비율
남성	채광(採鉱)부	4	26	59	104	193	35.6
	지주(支柱)부	6	22	20	8	56	10.3
	삭암(削岩) ³⁵ 부	3	14	5	7	29	5.4
	운반(運搬)부	15	41	56	27	139	25.5
	기 타	6	11	34	19	70	13.9
	계	34	114	174	165	487	90.7
여성	충전(充填)부 ³⁶		7	30	18	55	9.3
	계	34	121	204	183	542	

출처: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労働科学』 第20巻第10号, 労働科学研究所, 1943. 10, 71쪽.

〈표 4〉 결핵이환자 여성노동자 3명의 상황

연령	직종	근속	자각증상	결근일수	반응
32세	충전부	1년 11개월	무	1개년 34일: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신경통(4일), 그 외 가사로 인한	양성
41세	충전부	2년 3개월	무	1개년 42일: 감기(11일), 그 외 가사로 인한	양성
39세	충전부	1년 2개월	무리하면 어깨결림	1개년 36일	양성

출처: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78쪽.

전체 피검자의 3.5%이다. 규폐이환자는 11명인 2.1%이며 규폐 및 결핵이환자를 합하면 30명으로, 피검자 542명에 대해 5.6%³⁷ 〈표 4〉는 결핵이환자인 여성노동자 3명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노동자는 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35 삭암(削岩)이란, 탄광이나 광산에서 바위에 구멍을 내는 작업으로 주로 삭암기(削岩機)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6 충전(充填)이란 갱내채굴을 하는 탄광이나 광산에서 갱내에 생기는 공간을 폐석이나 저품질의 광석, 토사 등으로 메우는 작업으로, 금속광산에서는 주로 광석실수율(實收率)의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꾀하고, 또한 작업장 유지와 작업자의 안전한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작업을 한다.

37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90쪽.

판명되었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자각증세도 없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었다. 치료나 휴양은 커녕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근해야 했고, 결근의 이유도 질병보다 가사에 의한 결근율이 높았다.

‘여자갱내취업특례’에는 “연 1회 이상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조건이 있었지만, 이노우에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짧거나 이환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채용 시 적절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노무자는 물론 이환자에 대해서도 주거와 영양, 생활시간에 대한 생활지도가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³⁸ 하나오카광산의 노동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작업과 전시 노동력부족에 따라 강화된 노동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고, 더욱이 신규채용자의 질적 저하도 더해져 중일전쟁 당초부터 1941년 11월 현재까지 출근율도 평균 10% 떨어지고 있었다.³⁹

하나오카광산의 결핵이환자 발생과 관련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노동자의 거주공간을 간과할 수 없다. 아래의 글을 통해 1941년의 시점에서 노동자 숙사가 광산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6조 2칸이 이어지는 사택으로 방 하나는 마루로 되어 있다. 대부분은 이 방 2칸 중 다다미방을 침실로 해서 평균가족 6~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겨울이 긴 이 지방에서는 거주하는 시간도 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결핵의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감염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집 8채가 1동을 이루고 있고 동과 동은 8칸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다. 수도는 공동이어서 이웃과의 부딪침도 많고, 무자각성의 개방성결핵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되기 쉬운, 그러한 기회가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⁴⁰

8호를 1동으로 하는 나가야(長屋)형태의 밀집상태를 이루고 있는 사택은 공동수도를 사용하며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도시적 경향을 띠고 있어 결핵

38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90쪽.

39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86쪽.

40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89쪽.

감염의 기회가 상당히 높았다. 결핵이환자 19명 중 사택 거주자는 18명으로, 사택이 아닌 외부에서의 통근자는 겨우 1명이었다.⁴¹ 또한 영양적인 면에서도 전체 열량에서 주식(主食)이 차지하는 비율이 84.5~94.6%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교통편이나 넉넉지 못한 가계경제로 동물성식품은 구하기 어려워 영양적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⁴²

이처럼 하나오카광산의 여성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환경 속에서 불균형한 영양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결핵과 같이 감염되기 쉬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실상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후생성이 ‘여자 갱내취업특례’에서 제시한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 실시”와 “휴양, 위생 등의 복리시설 확충” 등의 조건이 순조롭게 지켜지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하나오카광산의 여성노무관리와 여성의 역할

후생성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대가 단순히 노동자의 역할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부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앞에서도 서술하였다. 이하에서는 1944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광산통제회⁴³에 의해 전개된 ‘개근필승운동’의 동 증산책임 완수목표에 따라 하나오카광산에서 이루어진 여성노무관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은 1935년부터 1945년까지 하나오카광산의 남녀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갱외의 여성노동자는 1938년 84명에서 1939년 171명으로 급증하였고 갱내에서도 954명에서 1,254명으로 증가하였다.⁴⁴ 그러나 갱외의 남성노동

41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86쪽.

42 井上房江, 「東北地方某金属山の肺結核罹患状況及其珪肺との関係」, 89~90쪽. 1941년 하나오카초에서는 “하나오카광산은 대량 소비지로서 현지사의 지시로 현의 미곡연합에서 직접 배급”한다고 적혀 있지만, 식량증산이 요구되는 전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넉넉한 배급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第3巻下, 419쪽.

43 상공성에서는 중요산업단체령 제2조에 따른 통제회를 설립하기 위해 철강, 석탄 이하 12개 업종을 중요산업으로 지정하고, 광산통제회(1941년 12월 18일)를 설립한다. 「鉱山統制会明年一月一日より日本金属鉱業連合会の事業「財産」権利業務一切を継承し業務を開始する」; 「鉱山統制会創立: 来春早々発足」, 『朝日新聞』, 1941. 12. 19.

44 후생성 노동국 조사에 의하면 1939년 9월 하나오카광산의 여성노동자는 91명(기혼 48명 중, 유자녀

〈표 5〉 하나오카광산의 노동자 수

연차	갱내(명)	갱외		계(명)
		남(명)	여(명)	
1935	860	520	59	1,439
1936	891	519	61	1,471
1937	912	766	79	1,757
1938	954	799	84	1,837
1939	1,254	629	171	2,054
1940	1,217	700	167	2,084
1941	1,230	756	200	2,186
1942	1,412	965	330	2,707
1943	1,756	1,347	497	3,600
1944	2,198	1,322	813	4,333
1945	746	1,164	336	2,246

비고: (1) 직원, 임시원(조선인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12월 말 인원으로 한다.

(2) 갱내의 인원수는 여자를 포함한다.

(3) 同和鉱業社刊, 『七十年の回顧』에서 작성.

출처: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第3巻下, 大館市, 1986, 508쪽.

자는 1938년 799명에서 629명으로 감소한다. 갱외 여성노동자의 증가율에서 1944년은 1935년에 비해 13.8배를 기록하고 있지만, 남성은 2.5배에 그치고 있다. 갱내만이 아닌 갱외에서도 부족한 노동력이 여성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오카광산은 1944년 1월 제국광발에 병합된 후 군수회사가 되어 당시 노무과장인 시라이시(白石貞太郎)⁴⁵는 ‘결전개근운동실시요강’(이하, 요강)을 발표하고 증산목표달성을 외치고 있다. 요강은 하나오카광산과 하나오카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노동자와 광산의 사택에 거주하는 여성과 통근광원의 아내, 즉 지역주민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기

여성 41명)이었지만 여성의 갱내노동이 허가된 후인 11월에는 50명이 증원되었다. 『戦前日本の社会事業・社会福祉資料』 第1期第8巻, 柏書房, 2017, 406쪽.

45 시라이시는 1934년 11월에 하나오카광산 서무계장, 1944년에 하나오카광산의 노무과장과 부소장, 1945년 이사를 역임하고, 전후(戰後)에는 미야기현(宮城県) 미야기군 리후(利府)소학교의 제24대 교장과 아키타현 보육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로 한다.

요강의 ‘개근필승철칙’에는 “1. 가사에 의한 결근은 일절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결근의 경우는 연근(連勤)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여 보충하고, “2. 모내기로 인한 결근은 인정할 수 없”으며, “3. 병에 의한 결근자(公傷者)를 제외)는 가족 혹은 이웃의 협력을 얻어 대신 근무할 사람을 출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⁶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결핵이환자인 여성노동자의 결근은 가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강에서는 가사뿐 아니라 병에 의한 결근조차도 대리근무자의 출근이나 공휴일 출근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다.

만일 이러한 개근철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자용 특배(特配)물자의 정지 및 보육소의 입소를 거절”하여, 노동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배급이 정지되거나 자녀의 보육소 입소가 금지되는 벌칙이 주어졌다. 반면 개근과 목표율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조촌(町村)별 개근상으로서 “상장 및 각호별 보육소 초대권을 증정”했다.⁴⁷ 광산의 보육소는 지역민에게 있어서 상으로서 주어지는 복리시설로 지역민의 노동력 이입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기능했고, 이것은 광산의 노무관리가 조촌의 지역민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철칙의 범위가 조촌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하나오카광산이 “산속에 있는 광산과는 달리 교통편이 좋아서 비교적 지방농촌과의 연결”⁴⁸이 가능해, 주변으로부터의 통근노동자가 전체의 30%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농한기에는 지역민이 광산에서 노동자로서 일하고 농번기에는 광산의 전 종업원이 참가해, “근로보국대를 결성해서 농가의 식량증산”⁴⁹을 도모하는 ‘광농일여체제’(鉱農一如体制)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그 때문에 철칙은 하나

46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1944. 8, 17쪽.

47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18~19쪽.

48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16쪽.

49 『特輯 - 非増産下の銅(上北・花岡鉱山)新鉱發見に蘇る東北の地下資源』, 『新經濟社』第3卷15号, 1943. 8, 19쪽.

50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16쪽.

오카광산만이 아닌 지역민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하나오카초에서는 1939년, 국민징용령이나 어류통제판매가 행해져 조나이카이(町内会), 부라쿠카이(部落会), 도나리구미(隣組)가 연이어 설치되었다.⁵¹

또한 도나리구미 부인회원 앞으로의 ‘결전개근운동실시의 건’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나 남편, 혹은 도나리구미의 사람이 출근할 때는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생각지도 못한 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결근해야 할 경우에는 대신 직장에서 용감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² 하나오카광산 측은 증산목표하에서 노동력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웃는 얼굴과 감사하는 마음을 여성이 지켜야 할 미덕으로서 거론하고,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급이나 보육소를 노무관리에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역민을 노동력으로서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조손별 개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손 전체의 목표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여성에게는 만일 투입시킬 수 있는 잠재적 대체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다.

4. 하나오카광산의 보육소 설치와 실태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 후지타구미가 설치한 하나오카광산의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보육과 건강, 위생 실태를 검토하고, 광산의 보육시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하나오카광산의 탁아소 설치와 운영

하나오카광산의 탁아소는 주식회사 후지타구미 하나오카광산보육소라는

51 田山久, 『花矢・大館地方史』, 花矢町教育委員会, 1967, 219쪽.

52 労務行政研究所, 『労政時報』(875), 21쪽.

명칭으로 유치원령이나 사회사업법과 같은 법령과 관계없이 이름만 보육소로 칭하고 있었다.

1933년 말, 부부가 함께 일하는 하나오카광산의 가정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 아이의 장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러한 맞벌이 가정은 주변 이웃에게 1개월에 5엔에서 7엔을 주고 아이를 맡기고 있었지만, 화재 발생 이후에는 광산 측에서 1934년 11월 사택의 나가야 한 채를 개방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하게 하고, 1937년 말에는 이것이 보육소로 불리게 되었다.⁵³

탁아소는 “광산종업원의 부재중에 보호자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맡아서 돌봄으로써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증산을 격려하고 나아가 차세대의 건전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시 하나오카광산의 서무계장인 시라이시에 의해 설치되었다.⁵⁴ 설치 당초는 사택 일부를 개조했을 뿐이었지만, 1936년 총건평 113평에 운동장 80평, 실내유희장, 담화실, 휴양실, 유아실, 1~2세 전용실, 식당, 조리실, 보모실, 건조장을 설치하고 독립된 건물로 이전하였다.⁵⁵ 1941년 하나오카광산의 2천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는 약 350명이었고, 그 중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은 200여 세대로 이들이 탁아소 이용자였다.⁵⁶

탁아소의 1개월분 예산은 보모 1인 월평균 35엔으로 인건비 370엔, 그 외의 비용 150엔으로 합계 570엔이었다. 탁아소에서는 설치 당초 소학교 대용(代用)교원⁵⁷ 1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지만 그 후 “부인”⁵⁸으로 교체했

53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1943, 565쪽. 본고에서는 유치원과 구분하기 위해 탁아소로 부르는 것으로 한다.

54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246쪽.

55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8쪽.

56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6쪽. 맞벌이 가정만이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광산노동의 특성상 주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광부의 아내이거나 가족이라는 특징이 있다.

57 전전(戰前)의 소학교에서는 유자격자 교원의 부족으로 무자격자인 교원을 대신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대용(代用)교원이라 하며, 1900년의 소학교령 개정으로 대용교원은 법령의 근거를 가진 용어가 되었다.

58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에는 ‘부인’으로 되어 있지만 『勞政時報』에는 “선생은 광원의 가정에서 나온 딸로서 말하자면 이 유치원 아동의 선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과 아동과의 관계는 일반

〈표 6〉 연차별 아동의 인원수(명)

연도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이용세대수	8	14	20	34	45	65	109	140	151	166	176	180
재적아동수	13	21	30	49	67	86	116	157	170	180	191	198
1일 평균 출석아동수	9	11	17	26	39	55	72	113	141	155	176	182

출처: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247쪽.

고, 보모 및 조수는 4명,⁵⁹ 유아반 2명, 영아반 2명, 조리사 2명, 심부름꾼 1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⁶⁰ 〈표 6〉은 연차별 아동의 인원수이다. 수의 증가와 연도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4년부터 1936년까지는 재적아동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193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 1940년에는 이용세대가 109세대를 기록하고 1941년에는 부부가 함께 일하는 200세대 중 70%인 140세대가 탁아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1937년 10월 8일 사회국에서 각 광산감독국장에게 ‘사변의 때에 광부노역부조규칙 취급에 관한 건’을 발한 방침대로, 1937년 말부터 여성의 갱내노동 금지완화를 앞두고 광산 측에서는 탁아소를 보육소로 개칭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¹ 하나오카광산은 1939년 9월 여성의 갱내노동이 허가된 후 탁아소 이용세대가 급증하자 1943년 5월 황후로부터 받은 ‘하사금’으로⁶² 6월에는 하나오카 우바자와(姥

유치원보다는 특히 깊고, 게다가 광원의 가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고 한다. 유치원만이 아니라 탁아소도 사태에 거주한 광원의 딸이나 가족이 보모로서 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25쪽.

59 1939년 9월 후생국 노동국의 조사에 의하면 유자격자인 보모가 1명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 유자격자가 “소학교 대용교원 1명의 직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戦前日本の社会事業 社会福祉資料』, 406쪽.

60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7쪽.

61 1937년 10월 8일 사회국장관은 각 광산감독국장에게 ‘사변의 때의 광부노역부조규칙 취급에 관한 건’을 발하고, “이번 사변에 광산의 생산 현상에 비추어 생각할 때 광부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아래의 제한 완화를 적당한 한도로 하여 노동력의 유지, 증진을 꾀하”도록 요청하였다. 勞働省, 『勞働行政史』 第一卷, 635~636쪽.

62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25쪽.

沢)로 이전하여 탁아소 건물을 신축하였다.⁶³ 이처럼 하나오카광산의 탁아소는 1937년에 설치된 이후 1945년의 시점에서는 맞벌이 세대의 90%가 이용할 정도로 광산노동자의 복리시설로서 정착되어 증산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하나오카광산 탁아소의 보육일과와 아이들의 건강 상태

본 절에서는 탁아소의 보육일과를 통해서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진 1일 2회의 수유시간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하나오카광산 탁아소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7>과 <표 8>은 유아반과 영아반의 보육일과이다.

탁아소 입소 대상은 생후 만 5개월부터 5세까지로 보육시간은 어머니의 노동시간과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노동시간은 갱내부와 갱외부로 구분

<표 7> 보육일과(유아반)

시간	보육내용	시간	보육내용
(오전) 6시부터	등소	(오후) 12시부터	단체놀이
8시	조례, 창가, 유희	1시	손기술(종이접기)
9시 반	조식	2시	간식, 자유놀이, 그 외
10시	자유놀이	4시	귀가
10시 반	식전위생, 용변		
11시	식사		

* 6~7세 유아는 탁아소에서 후타바유치원(하나오카광산의 유치원)으로 올라가 교육을 받는다.⁶⁴

출처: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9쪽.

<표 8> 보육일과(영아반)

시간	보육내용	시간	보육내용
(오전) 9시부터	엄소젖, 죽	(오후) 2시~2시 반	갱내부 수유
11시~11시 반	모유	3시~3시 반	갱외부 수유

출처: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9쪽.

63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246쪽.

64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9쪽.

되어 갱내부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인 8시간, 갱외부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9시간이고, 보육시간도 이에 맞추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10시간이었다.⁶⁵

또한 영아반의 보육일과에서는 광부노역부조규칙개정에 의한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진 1일 2회의 수유시간 중 1회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3시간 간격으로 수유시간을 설정해 11시부터 11시 반은 여성노동자에 의한 직접 수유가 행해지고 있지만, 오전 9시의 경우는 염소젖과 죽으로 대체하고 있다.⁶⁶ 왜 여성노동자에 의한 수유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일까? 여성노동자에게 오전 9시부터 30분간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있었지만, 갱내에서 탁아소까지는 12~13분이 소요되므로 이 시간에 수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탁아소에서는 대신 염소젖을 먹이고 있었다.⁶⁷ 그러나 염소의 “수가 적어서 수요를 채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⁶⁸ 출근 전 여성노동자가 아이를 탁아소로 데려올 때 찻가루나 연유를 녹인 젖병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던 것이다.⁶⁹ 그렇다면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당시 탁아소를 방문한 이노우에는 그 감상을 『노동과학』(1943년 3월)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영유아의 체중측정과 건강진단 결과, 생후 5개월부터 만 3년 반까지의 영유아 28명을 검사한 가운데 표준발육 90% 이상의 발육을 보이는 것은 겨우 5명으로, 10~20% 부족한 것이 11명, 20~30% 부족한 것이 6명, 30% 이상 부족한 것이 2명으로 대부분은 표준발육보다 훨씬 마른 아이들이다. 얼굴색이 창백한 아이가 많고, 기관지염 2명, 설사증상을 수반한 만성소화불량성 영양실조증 3명, 고

65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6쪽.

66 井上房江, 「(附)某鉱山託児所を見て」, 『労働科学』 第20巻第3号, 労働科学研究所, 1943. 3, 124쪽.

67 井上房江, 「(附)某鉱山託児所を見て」, 124~125쪽.

68 이러한 상태는 전후에도 계속되어 출생 262명에 대해 모유 부족에 의한 사망 77명으로 영유아의 사망률이 약 30%를 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47년에 건강조합회를 조직하고 염소젖(山羊乳)을 제공하기 위해 1948년 7월 양축소(養畜所)를 설치한다. 木葉武英, 「花岡鉱山の健保(2)」, 『健康保険』 第4巻7号, 健康保険組合連合会, 1950. 7, 18~19쪽.

69 井上房江, 「(附)某鉱山託児所を見て」, 124~125쪽.

도의 곡물가루영양장애가 2명, 질병 후 청력을 잃어버린 아이가 1명으로 그 외 발육불량의 대부분은 영양실조증이다. 대부분이 농가진, 습진, 백반 등의 피부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결막염과 트라코마도 많았다.⁷⁰

이노우에가 탁아소를 방문했을 때 탁아소에는 약 100명의 갱내부와 70~80명의 갱외부가 아이를 맡겨 재적수는 유아 101명, 영아 48명이었지만 조사 당일에는 유아 52~53명, 영아 40명 전후로, 그 중 영유아 28명이 검사 대상이었다. 탁아소는 광산의 복리시설로서 선전되어 『오다테시사』(大館市史)에도 언급되고 있지만,⁷¹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차세대의 건전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탁아소의 방침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오카광산의 또 다른 복리시설인 광산병원의 의원 및 간호부는 탁아의 건강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탁아소의 아이들은 입소 시 광산의료국에서 일단 건강진단을 받지만, 입소 후에는 일정한 건강진단이나 발육 측정이 없었으며⁷² 급식과 간식의 메뉴나 인공영양, 청결이나 위생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 없이 단순한 ‘탁아’의 수준에 놓여 있었다.⁷³ 하나오카광산 탁아소는 ‘여자갱내취업특례’에서 내건 “영유아를 위한 보육소와 그것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되었지만, 관리 부실로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오카광산 탁아소가 후생성 방침에 따른 복리시설이면서도, 실태는 ‘형식적인 완비’에 지나지 않았던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⁴

3) 유치원이라는 교화(敎化)장치

유치원은 하나오카광산을 대표하는 복리시설로서 노무과장 시라이시의 ‘자

70 井上房江, 「(附)某鉱山託児所を見て」, 125쪽.

71 大館市史編纂委員会, 『大館市史』, 246~247쪽.

72 井上房江, 「(附)某鉱山託児所を見て」, 125쪽.

73 中央社会事業協会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69쪽.

74 市川房枝編纂, 「第3節鉱山に於ける生産活動」, 59쪽.

랑거리'였다.⁷⁵ 이하에서는 유치원의 설치와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하나오카광산에서 유치원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유치원의 정식명칭은 하나오카광산 후타바유치원이고 경영주체는 주식회사 후지타구미이다. 1935년 1월 10일 시라이시는 “종업원의 유아를 보육하고 건전한 심신과 성정을 함양하여 가정교육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하였다. 유치원 또한 유치원령이나 사회사업법과는 관계없이 이름만을 유치원으로 칭하고 68.7평(3실)의 독립적인 건물에 회전시소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⁷⁶

하나오카광산에 거주하는 6세부터 7세까지의 학령 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오전반은 9시부터 12시까지의 3시간, 오후반은 1시부터 3까지의 2시간을 보육하고 보육료는 무료였다.⁷⁷ 시라이시가 스스로 원장을 맡았고 직원은 노무계의 서기 2명, 보조 2명, 조수 2명, 그 외 2명, 계 9명이었으며 재적아동수는 144명이다.⁷⁸ <표 8>은 1935년부터 1940년까지의 유치원의 졸업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1936년 이전의 유치원 졸업아동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1937년에 이르면 전년대비 약 2배로 급증하고 이후 매년 13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의 보육강령은 “아이들의 양육에 힘쓰자, 바른 생활을 하자, 훌륭한 가풍을 만들자”이며⁷⁹ 그 범위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광원의 가정까지 미치고 있었다. 하나오카광산에서는 “예전에는 광원의 정신도 황폐하고 풍기도 문란하여 여름에는 반나체의 남녀가 왕래하였지만, 아이들에 대한 예절교육으로 점차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어, 현재는 이미 풍기도 정신도 일본인으로서 조금도 수치스러운 점이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유치원 설치 후 광원의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⁸⁰

75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25쪽.

76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71쪽.

77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70쪽.

78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70~571쪽.

79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71쪽.

80 勞務行政研究所, 『勞政時報』(875), 25쪽.

〈표 8〉 유치원 졸업아동수

연도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평균
아동수(명)	41	66	122	135	136	131	126

출처: 中央社会事業協會社会事業研究所, 『本邦保育施設に関する調査』, 571쪽.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유치원 보모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유치원 보모는 광원가정의 딸로서 하나오카유치원 유아들의 선배가 되기에, 원아들은 물론 광원의 가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⁸¹ “회사는 부모이고 종업원은 그 자제이다, 이 방침은 후지타구미 창립 이래의 방침”이라고 한 것처럼, 보모는 원아의 선생님이라기보다 광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후지타구미 가족의 연장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보육과 예절에 관한 교육만이 아니라 정신과 품기면에 있어서도 광원의 생활을 교화하는 장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5. 나오며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1937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총력전시기 여성노동력이 급증한 하나오카광산 여성노동자와 보육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미혼여성만이 아닌 기혼여성도 노동력으로 동원하였으며 탁아소가 여성노동력 동원을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기 일본의 보육정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출산 증가라는 인구정책을 양립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해,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나오카광산 탁아소는 광산노동자를 위해 설치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영유아를 위한 탁아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81 労務行政研究所, 『労政時報』(875), 25쪽.

아니라 노동자의 근무 상태나 성과와도 연결되는 노무관리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광산이 산이 아니라 평평한 분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농민과도 연계된 ‘광농일여체제’가 행해져 지역과 광산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탁아소에서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광산의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에게도 비상시국(非常時局)에 어울리는 국민으로서의 교육을 행함으로써, 탁아소는 지역민에 대한 교화장치 역할도 담당하였다. 전시기의 증산 요구에 따른 탁아소의 지역밀착적인 운영은 결과적으로 탁아소를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의 여성마저도 남성의 대체노동력으로 동원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오카광산의 특징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탁아소의 지역 정착은 지역민의 교화와 함께 잠재적인 노동력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나오카광산이 지역민과 교류하여 증산을 달성한 포상으로 지역민을 탁아소에 초대하고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확실히 지역민에게 탁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전후에 탁아소가 지역에 정착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하나오카유치원은 광원의 딸을 보모로 고용하여 원아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광원의 정신과 풍기를 바꾸고 개선하며 교화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즉, 하나오카광산의 보육시설은 지역밀착형 시설로서, 보모와 아동의 관계는 위로는 부모세대의 광원까지, 옆으로는 지역민으로까지 확장되어 그 영향력이 다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오카광산의 보육시설이 노무관리와 탁아, 선전과 교화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여성노동자와 영유아의 건강이나 위생적인 측면은 전신탁아소로서 기대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나오카광산에서는 1939년 여성의 갱내노동이 허가된 후 여성노동자가 급증하였지만, 광산의 거주공간인 나가야는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건강과 체력이 중시된 전시기에 하나오카광산은 여성노동자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건강과 위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탁아소의 영유아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채 관리부실로 인한 영양실조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나오카광산 탄아소가 생산력 확충과 인구정책의 양립을 위해 설치된 전시탄아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후생성령에 의한 여성갱내노동허가에 대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오카광산의 경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전시기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다. 후생성은 여성을 남성의 대체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도 어머니이자 주부로서의 양처현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성별역할분담에 의거한 젠더적 규범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예로 하나오카광산은 지역민 여성에게까지도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웃는 얼굴과 감사의 격려를 여성의 지켜야 할 덕목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기 여성노동자에 대한 젠더적 인식은 일본 정부가 전쟁 말기 심각한 노동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신규징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총력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젠더적 규범 안에서 이중의 역할 부담을 안고 있었던 여성노동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다.